2026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공모 1차

<2026년 주요 변경사항>

구분	2025년(당초)		2026년(변경)
지원방법	ㅇ 사전 선정 및 공연 후 지원 : 공모 ⇨ 행정심사 ⇨ 공연 후 지원 ㅇ 연 2회 공모	➔	ㅇ 사후 선정 : 공모 ⇨ 행정심사 ⇨ 지원 ※ 선정 후 공연 취소 등 불용 리스크 감소 ㅇ 연 3회 공모 ※ 충분한 신청 기회 제공
지원대상	ㅇ 전문예술단체(예술인) 중심 지원 ※ 최초 (개인) 예술활동증명 '지원신청' 단계 불인정 → 2차 공모 시 한시적 허용 ㅇ 유료 공연만 해당 ※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등록 및 티켓판매시스템 활용 필수		ㅇ 전문예술단체(예술인) 중심 지원 ※ (개인) 예술활동증명 '지원신청' 단계 한시적 허용 ㅇ 티켓 판매 시스템을 활용한 유료 공연만 해당 ※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등록 및 티켓판매시스템 활용(정산서) 필수 ※ 정산서 발행이 불가한 개별 예약 관리 시스템 불인정
지원규모	ㅇ 최대 15백만 원		ㅇ 최대 25백만 원
지원 사각지대 해소	ㅇ 중복지원 불가(보충성 원칙)		ㅇ 중복지원 불가(보충성 원칙) ※ 단, 문예기금 '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' 사업 제외

1. 사업목적

ㅇ 공연 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/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2. 지원신청자격

ㅇ 기초공연예술분야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

- (단체/법인) 반드시 단체(법인) 명의로 신청(대표자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)
- (개인)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)을 보유한 자

※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

※ 2인 이상 그룹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'단체' 명의로 신청 권장

※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(미준수 시 행정결격 처리)

공연 유형	신청 요령
개인공연	신청자 개인 명의로 신청
단체공연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)	신청단체 명의로 신청 (유사 단체 명의, 단체 대표 . 실무자 등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)
프로젝트 단체 공연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)	프로젝트 구성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

· 예술단체(예술인)와 공연장 간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, 단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(연출, 작가, 행정

직원 등)이 대관계약 또는 대관료를 납부한 경우, 4대보험 납부확인서, 공연 홍보물(포스터, 프로그램북 등) 등을 통해 단체 구성원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※ 지원신청 시 공연주체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. 제3자의 대리 신청 불가(단, 대관료 대리 납부는 가능함)

3. 지원내용

○ 지원신청대상

- 대상기간 중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국내 예술단체(예술인)의 기초 공연예술 분야 대관 공연

※ 기초공연예술분야 외 공연, 생활문화예술 공연, 무료(초대) 공연은 지원 제외

(예시 : 대중가수 콘서트, 토크콘서트, 인디밴드 공연, 개그공연, 동호회, 학원, 협/단체 행사성 공연 등)

1차	2026.01.01.~04.30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
2차	2026.05.01.~08.31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
3차	2026.09.01.~12.31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

※ 공연 시작일은 반드시 202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

※ 지원 제외대상

· **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단체/개인**
※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(한국메세나협회 주관)을 지원받는 단체/개인 포함
※ 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(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)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예술활동준비지원금에 선정된 경우 공모지원 가능
· **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을 통하여 공공지원을 받는 단체/개인**
- (공동)기획공연 포함
·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·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또는 신앙인들로 구성된 단체
· 교육기관, 초.중.고교 및 대학.대학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
· 기념사업회 등 공연을 주된 활동으로 영위하지 않는 단체
· 교원 연구 실적을 위한 공연(연구비 지원 공연)
· 공연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
(대중가수 콘서트, 토크콘서트, 인디밴드 공연, 마술쇼, 버블쇼, 개그 공연 등)
· 해외 공연예술단체/개인의 내한공연(월드투어 등)
· 워크숍 . 쇼케이스.마스터클래스 등 행사성 공연, 동호회 . 학원 등 생활문화예술 공연
· 지원신청단체(개인) 및 가족, 소속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(자가, 임대, 위탁운영 포함) 에서 진행한 공연(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기간 중에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)
· 공연장 자체 기획 공연(공동 기획 포함)
·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(티켓 오픈 및 판매 내역/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, 온라인 무관중 (비공개) 공연)
· 허위 대관 계약,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
·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(문예진흥기금 공통)가 참여한 공연

○ 지원내용 : 대관료(설치·리허설·공연·철수대관)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최대 90%(부가세 10% 제외)

- 최종 지원결정액은 회차별 공모 배정예산을 고려하여 산출됨에 따라 신청액과 지원액이 다를 수 있음. 선정 건수가 많으면 단체별 지원액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.

- 설치 및 리허설(준비대관) 일정이 1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,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하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(무대·조명·음향장비, 악기, 녹화·녹음, 냉·난방 등)에 한하며, 온라인 홍보비, 연습실 사용료, 주차권 구입, 포스터/배너 설치비, 티켓발권비, 외부 장비 임차료(조율비), 로비사용료, VIP대기실사용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
-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내역 및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ㅇ 지원규모 : 단체(개인)별 연간 최대 25백만원(부가세 제외)
-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도 1개 단체로 간주함
-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4. 지원심의

ㅇ 심의방식 : 서류심의(지원신청서, 필수 제출자료 검토)
- 1차 :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검토를 통한 서류 심사(결격심의)
- 2차(필요 시) : 지역문화재단 또는 장르별 협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서류 심사(신청주체 자격 심의)

ㅇ 심의기준

기준	세부 평가내용
신청사업의 지원 적격성	-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-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공연 시작일 및 종료일) -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-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(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제외 대상사업 등 결격 여부 확인)
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	- 필수 제출자료(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) 제출 여부 -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 및 증빙 여부 - 대관 계약(대관료 납부) 주체와 지원신청 주체의 일치 여부 -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여부 (신청금액 및 증빙자료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)
중복배제	- 공공지원 받지 않은 단체 여부

5. 지원신청

ㅇ 신청기간
- 1차 : 2026.05.01.(금) ~ 05.15.(금) 18:00까지
- 2차 : 2026.09.01.(화) ~ 09.15.(화) 18:00까지
- 3차 : 2026.12.07.(월) ~ 12.21.(월) 18:00까지

ㅇ 신청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· 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
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**단체 명**의로 등록해야 합니다.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 (결과 발표 등 안내 사항 SMS 발송 예정)
· **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신청 기간 초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을 받지 않사오니,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: 1577-8751, 또는 자료실 >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

ㅇ 필수 제출자료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파일 첨부 면에 첨부하여 제출

- 행정 심의 결격사유
  ① 타 사업에 지원신청(NCAS 분류 잘못 선택) ② 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
  ③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

※ 자료 보완요청 연락은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, 반드시 제출 전 확인 바랍니다.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① 지원신청서 [다운로드]	**필수**	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**[파일명 : 1. 지원신청서_단체명]** ※ 공연 증빙 팸플릿, 현장사진(관객) 등 필수 포함 ※ 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 ※ 지원신청서 내 '확인서', '서약서', '동의서'를 반드시 작성·첨부 (서명/날인 필수, 누락 시 결격)
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(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) ※ 금액 미포함 시 금액 기재된 별도 납부 증빙서류 필수, 미제출 시 지원 제외)	**필수**	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, 다음 중 택일 - (필수) 계약서, 대관승인공문, 대관확정서 - (해당하는 경우) 기획사 대행 계약서 **[파일명 : 2. 대관계약 증빙서류_단체명]** ※ 최초 계약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다면, 최초 작성한 계약서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종 계약서 첨부 ※ 계약주체별 날인(서명)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
③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(선금 등) (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, 미포함 시 지원 제외)	**필수**	신청인(단체)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, 아래의①~④의 서류 중 순차적으로 가능한 방식 선택 제출 (* ①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 ②~④로 증빙하지 않음) - ① 전자(세금)계산서+계좌이체확인증 - ② 대관료/지방세외수입 납부 통지서/납부확인서(공연장 직인 필수)+계좌이체확인증 - ③ 현금영수증(홈택스) - ④ 신용/체크카드 영수증(매출전표) **[파일명 : 3.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]** ※ 계좌이체확인증은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금액 및 이체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통장거래내역제출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격 ※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 포함)가 일치해야 하며,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※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(단체) 명의가 상이한 경우,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,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(증빙자료 제출)
④ 공연장등록증 사본	**필수**	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, 신청인(단체)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**[파일명 : 4. 공연장등록증_단체명]**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		※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. 공연법 제9조 1항에 의거 법정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등록증으로 제출해야 함
⑤ 지원단체 증빙서류	**필수**	**(단체)**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 중 택1 ※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개인 및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 (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) **(개인)**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), 예술활동증명 ※ 프로젝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만 제출, 예술활동증명은 구성원 3인 이상 제출 ※ 신분증은 세무 신고 및 과세 활용 목적으로, 미선정 시 즉시 폐기되며, 선정 시 5년간 보관됨 ※ 외국 국적의 국내 활동 예술인의 경우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제출 필수 **[파일명 : 5.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]**
⑥ 공연 프로그램 소개 자료	**필수**	공연 프로그램 구성 등 내용 확인이 가능한 공연 소개자료 1건 이상 제출(아래 항목 중 택1) - ① 리플렛 - ② 프로그램북 - ③ 예매사이트 예매화면 **[파일명 : 6. 공연 프로그램 소개 자료_단체명]**
⑦ 통장 사본	**필수**	신청단체 명의의 통장사본(계좌정보면) ※ 고유번호증, 프로젝트그룹은 단체 대표자 명의 통장 제출 **[파일명 : 7. 통장 사본_단체명]**
⑧ 티켓 판매 정산서	**필수**	티켓 판매 시스템 제공업체(인터파크, 예스24 등)의 직인/워터마크가 날인된 정산서(담당자 연락처 포함) ※ 워터마크가 있는 정산서는 담당자 연락처 미기재도 인정함 ※ 엑셀, 한글 등 편집이 가능한 문서 파일 불인정. PDF로 제출 **[파일명 : 8. 티켓 판매 정산서_단체명]**

6.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※ 추진일정은 지원신청 접수 건수, 주관처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7. 유의사항

- ㅇ **(지원 제한)** 본 사업은 **신청주체별 연 1건만** 선정 가능합니다.
- ㅇ **(제출자료의 효력)** 제출자료의 날인(서명)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, 계약서 또는 확인서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, 행정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ㅇ **(지원금 결정)**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ㅇ **(기타)**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,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,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
8. 문의처

- ㅇ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02-743-4166, 4177
-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061-900-2251

  ※ 문의 시간 안내 : 평일 10:00~17:00 (12:00~13:00 제외)

* 지원시스템(NCAS)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(1577-8751) 이용 바랍니다.

지원신청 유의사항

[공통사항]

› 문화예술진흥기금 **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**부탁드립니다.
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[세부사항]

›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.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.